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화(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ANWHA CORPORATION(약호 HWC)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화약류의 제조, 판매, 운송, 보관, 수출입, 발파/철거/해체용역 및 화약응용사업
- 2) 군수품의 제조,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3) 화공품, 농약, 농약원제, 염료, 비료, 기타 기초화합물 등 유·무기화학제품류 및 그 원료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4)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용구, 위생용품 등), 동물약품, 식품첨가물, 기타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보관, 수출입 및 동 수입품, 동 원료의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5) 환경보전설비, 기자재, 약품, 기타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보관, 수출입 및 환경보전처리 용역업
- 6) 독극물의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7) 소재(복합재료, 유·무기재료, 금속제품 등)의 제조,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8)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류 관련 제품, 부품, 설비의 제조, 판매, 보관, 수출입 및 대여업
- 9)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제품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10) 광산 및 광물의 개발, 광업 및 건설용 기자재 및 광물의 제조, 판매, 수출입, 임대업 및 관련사업

- 11) 농·수·축·임산물, 화훼, 염, 광산물, 모래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12) 베어링 류의 판매, 보관, 수출입 및 금속류, 기계류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13) 철강 류, 비철금속 류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14) 공작기계 및 정밀기기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임대업
- 15) 계량기기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16) 각종 도자기 제품 류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민속자료제외)
- 17) 의류 및 스포츠, 레저용품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18) 음/식료품, 식품 류(건강식품 등) 및 동 수입품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19) 종이류 및 제지 생산설비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20) 가구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21) 원피 및 가공피혁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22) 원면, 면사, 화학석유제품, 화학사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23) 전기·전자기기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 설치, 보관 및 수출입
- 24)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컴퓨터학원 운영업, 임대업, 판매업, 수출입 및 관련사업
- 25)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구성 및 운영과 용역의 제공
- 26) 정보통신기기류의 개발, 제조, 판매, 보관, 설치 및 수출입
- 27) 출판 및 도서판매업
- 28) LPG 및 LNG수출입, 저장, 충전, 판매, 및 부대사업
- 29) 수출입업, 동대행업 및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 30) 도·소매업

- 3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32) 산업설비 및 기술용역의 판매 및 수출입
- 33) 용역경비업 및 빌딩관리업
- 34) 조림업
- 35) 음식점업
- 36) 토목, 건축, 기계, 석도 류에 관한 설계, 시공, 감리 용역업
- 37) 전기공사 및 이에 수반된 부대사업
- 38) 전기통신 공사업
- 39) 가스시설 공사업
- 40) 주택건설사업
- 41) 공동주택건설, 분양업 및 공동주택 관리업
- 42) 임대주택업
- 43) 수질오염/대기오염/소음진동방지시설업 및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 및 설비 등의 설계, 시공업
- 44)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및 재활용업
- 45)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 46) 준설공사업
- 47) 포장공사업
- 48) 조경공사업
- 49) 문화재 보수 공사업
- 50) 철강재 설치 공사업
- 51) 상하수도 설비, 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업

- 52) 지하수개발 및 광산업(석산개발사업 및 석재가공,판매, 보관 및 수출입 포함)
- 53) 임야개간 및 개발, 조림사업
- 54) 소방설비 공사업 및 방재사업 관련기기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
- 55) 군납업
- 56)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 57) 시멘트, 골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류, 기타 각종 건설자재류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58) 기계, 전기, 중기용품 및 화공약품의 판매업
- 59) 중장비, 전동차, 자동차의 판매, 대여 및 수출입
- 60) 종합관광 및 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콘도미니엄 등 레저산업운영 및 숙박업, 호텔업 및 요식업, 골프장개발 및 운영업, 온천개발 및 운영업, 종합체육시설업)
- 61) 기술용역업(기계부문, 선박부문, 항공/우주부문, 금속부문, 섬유부문, 광업부문, 건설부문, 환경부문, 농림부문, 해양/수산부문, 산업관리부문, 응용이학부문, 전기/전자부문, 통신기기부문, 정보/통신처리부문, 자동 제어기기부문 등)
- 62) 건설공사의 시공, 감리 및 전면책임 감리업
- 63) 일반측량업
- 64)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에 관한 사업(투자, 관리, 운영)
- 65) 내외국인 또는 내외국 법인과 각호에 관련되는 투자 또는 합작사업
- 66) 해외건설업(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토목공사업, 특수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건설용역업 및 기타 관련부대사업 일체)
- 67)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업
- 68) 통신기기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조, 개발, 판매, 설치 및 수출입
- 69) 자동제어기기 및 응용설비의 제조, 개발, 판매, 설치 및 수출입

- 70) 광섬유, 케이블 및 관련기기의 제조, 개발, 판매, 설치 및 수출입
- 71) LPG 및 LNG용 고압용기 류의 제조, 판매, 보관, 수출입 및 관련부대사업
- 72)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임대업
- 73)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원료·부품·소재·기기의 제조, 설치,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74) 국내외 발전 및 전력의 판매
- 75) 발전소 시설의 국내외 건설, 소유 및 운영
- 76) 국내외 자원의 개발, 생산 및 판매
- 77) 별정통신사업
- 78) 모형로켓 및 관련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
- 79)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
- 80) 토양, 지하수 오염조사 및 복원사업
- 81) 전자상거래 및 INTERNET 관련 사업
- 82) 창업보육 사업
- 83) 주류 중개업 및 수출입업
- 84) 목재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및 수출입
- 85) 지적재산권 라이선싱업
- 86) 이벤트개최 및 행사대행업
- 87)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업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판매, 수출입, 중개업
- 88) 공업로 제조, 가공, 조립, 판매, 수출입
- 89) 기계식 자동주차설비 제조, 가공, 조립, 판매, 수출입
- 90) 해상화물운송업,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 91) 교육서비스 사업

- 92) 국내외 보관창고, 물류시설, 가공센터의 매매, 운영, 임대차 및 판매사업
- 93) 광고대행업
- 94) 기타 각호에 관련되는 설계, 설치, 시공, 운영, 임대, 가공, 운송, 보관, 개발, 중개 등 일체의 부대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1)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whacorp.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발행되는 일간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1)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4,000만주로 한다.
-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20% 이내 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3) 제2항의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배당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8)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 9 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 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 10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1)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및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 및 관계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 및 관계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를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2)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4) 제 3항의 취급사무에 관한 절차는 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 규정 등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제 11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 1항 및 제 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1)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한다.
- 2)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로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3,0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1,000억 원은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0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1,000억 원은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조, 제 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소집시기)

-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2)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경향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 장)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주주에 한한다.
-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의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 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29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3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의 2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1)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2)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3)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
-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의사록)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2 (위원회)

-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 위원회에 대해서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1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3)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 4)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권한 또한 주주총회에 있다.
- 6)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7)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1 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6)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8)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의결할 수 없다.
- 9)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1 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 42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제1항의 각 서류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 한다.
- 2)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대표이사는 제 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5 조 (이익배당)

-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6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47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회사가 개정상법 시행일(1996년 10월 1일)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 (보통주식 배당률 + 1%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종류주식을 배정한다.

3. (신주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발행한도 적용에 관하여 2014년 3월 21일 이전에 기 발행한 주식의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 관 개 정 현 황

1. 1952.10.28 정관개정.
2. 1975.10.10 존립 기간 연장.
3. 1976. 2.14 액면 분할 등.
4. 1976. 6. 5 농약제조 목적사항 추가.
5. 1978. 2.27 목적사항 정리 및 수권자본금 증액 등.
6. 1980. 2.26 목적사항 추가, 존립기간 삭제 및 수권자본금 증액 등.
7. 1983. 2.29 목적사항 추가.
8. 1984. 2.29 목적사항 추가, 시가발행 조항 신설.
9. 1984. 5.30 목적사항 추가 및 수권자본금 증액, 주주명부 폐쇄기간 연장.
10. 1985. 2.27 목적사항 추가 및 상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11. 1986. 2.27 액면 병합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12. 1987. 2.27 수권자본금 증액 및 기명식 우선주식발행 조항 신설.
13. 1987.11. 2 목적사항 추가,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조항 신설.
14. 1989. 2.28 수권자본금 증액,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이익배당 조항 변경.
15. 1990. 2.28 목적사항 추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조항 등 변경.
16. 1991. 2.28 목적사항 추가, 공고신문 변경.
17. 1992. 2.28 목적사항 추가.
18. 1993. 2.27 상호변경, 목적사항 추가.
19. 1994. 2.28 목적사항 추가, 사채관련사항 변경.
20. 1994. 9.23 목적사항 추가(골든벨상사(주) 흡수 합병).
21. 1995. 2.28 목적사항 추가 및 신설(덕산토건(주) 흡수 합병).
22. 1996. 2.26 수권자본금 증액, 목적사항 추가, 상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23. 1996.10. 1 사업목적사항 추가(한화전자정보통신(주) 흡수 합병).
24. 1997. 3. 7 사업목적사항 정리 및 추가, 전환사채 발행 한도액 증액, 이사 및 감사의 수 관련조항 변경.
25. 1998. 3.24 사업목적사항 추가, 신형 우선주 발행,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발행요건 확대, 주식매수선택권 신설, 일반공모증자 조항 신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 증액, 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회장과 부회장 추가, 부칙에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명시.
26. 1998. 9.24 사업목적사항 추가(한화기계(주) 흡수합병), 이사 및 감사의 수 관련조항 변경.
27. 1999. 3.24 사업목적사항 추가,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 조정, 신주인수권 범위 확대,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 확대, 주식예탁증서 발행한도 명시, 경영참고사항 비치, 이사의 수 변경, 집중투표제 적용 배제, 이사의 임기 조정 조항 변경 및 신설.
28. 2000. 3.23 사업목적사항 추가, 신주인수권 조항 수정, 주식매수선택권의 자구수정 및 조항변경, 일반공모증자 조항 일부 삭제, 이사의 수 변경, 위원회 조항 신설, 감사조항 삭제 및 감사위원회 조항 신설.
29. 2001. 3.23 주식매수선택권 자구수정 및 내용변경, 이사의 수 내용변경 및 단서조항 신설, 위원회 조항 신설, 주식의 소각 조항 신설.
30. 2002. 3.27 사업목적사항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자구 수정, 소집통지 및 공고 자구수정, 경영위원회 조항 삭제, 감사위원회 조항 추가.
31. 2003. 3.21 신주인수권 조항신설 및 일반공모증자조항과 통합, 이사의수 축소, 주식매수선택권 자구 수정, 소집통지 및 공고 일부 조항 삭제, 사외이사후보의 추천조항 신설, 대표이사의 선임 및 이사의 직무 조항 수정, 이사의 보고 의무 조항변경, 감사위원회 구성 및 직무 조항 수정,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이익금처분조항 수정, 부칙조항

신설.

- 32 2004. 3.19 사업목적사항 추가, 중복내용 삭제 및 문구변경.
- 33 2005. 3.18 주식매수선택권 조문 변경, 이사의 수 조문 변경, 고문 및 상담역 조문 삭제.
- 34 2006. 3.22 사업목적사항 추가, 서면투표제 도입을 위한 조문 추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35 2007. 3.23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 36 2008. 3.21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 37 2009. 3.20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 변경,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정관 변경.
- 38 2010. 3. 19 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관 변경.
- 39 2011. 3. 18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 변경, 이사의 임기 조문 변경 및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 단축.
- 40 2012. 3. 23 개정상법 시행(2012.4.15)에 따른 정관 변경.
- 41 2013. 3. 22 사업목적사항 추가, 우선주식 명칭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조건 변경.
- 42 2014. 3.21 증자방식 체계 변경, 신주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한 경우 주주에 대한 별도의 통지·공고의무 면제,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자격에 관한 상법 시행령 참조조문 변경, 이익배당 지급수단 추가.